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특수임무유공자, 그 유족 등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국내 주소 변동 신고를 할 경우 구술 또는 전화로도 갈음할 수 있도록 신상변동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OO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12. 00. ~ 2024. 1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7조 각 호 및 제1항”를 “법 제7조 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국내 주소에 대하여는 제3항 본문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변동사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인의 구술 또는 전화를 통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신상 변동신고 등) ① (생략)	제5조(신상 변동신고 등) ① (현행과 같음)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 특수임무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법 제7조 각 호 및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(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<u>법 제7조제1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~8. (생략)	1.~8. (현행과 같음)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수임무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국내 주소에 대하여는 제3항 본문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변동사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인의 구술 또는 전화를 통한 신고로 같음할 수 있다.